

PG 서비스 통합 신청서

서비스신청서(kyc) + FIRSTPAY 전자결제서비스

FIRSTPAY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 신청서

1. 사업자 정보 *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사업자 구분		○ 개인	○ 법인	*과세 표시	☐ 과세	○ 면세
공동 (개인/법인)	*상호명			*간판명	상호명과 다를 경우 기입	
	상호명(영문)	외국법인 필수		*주요판매품목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업종			*사업장 이메일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법인	우편물수령지	사업장 주소와 다를 경우 기입				
	*법인등록번호			*설립 일자	YYYY/MM/DD	
	*법인설립국가	국가 기입		해외법인등록번호	해외법인 시	
	*법인 구분	○ 대기업 ○ 중소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 비영리법인 ○ 기타()				
	설립목적(비영리법인)	○ 학술 ○ 종교 ○ 자선 ○ 문화 ○ 교육 ○ 사회사업 ○ 친족 ○ 기타() 법인구분에서 [비영리법인] 선택 시 필수 입력				
	*상장 여부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비상장 ○ 뉴욕증권거래소 ○ NASDA ○ 런던증권거래소 ○ 홍콩증권거래소 ○ 기타()				
	*무기명주식발행여부	○ 예 ☐ 아니오 무기명주식이란? 주주 명부나 주권에도 주주의 성명이 공시되고 있지 않은 주식				
	*명의주주존재여부	○ 예 ☐ 아니오 명의주주란? 실질적인 주식소유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				
	*신탁사 여부	○ 예 ☐ 아니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1. 퍼스트페이 이용 계약을 위한 거래처 등록 및 거래대금 입금계좌와 관련된 모든 제반 서류에 대한 인감을 신고합니다. 2. 당사는 신고된 입금계좌 및 인감만을 이용기로 하고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귀사에 변경신고 하겠으며, 입금계좌 및 인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통장인감/서명	통장 인감/서명이 없는 경우 생략	
담당자 정보						
*정산 담당		부서명		*전화/휴대폰		
				*E-mail		

2. 대표자 정보 *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공통(1)	*한글 성명		*생년월일	
	*영문 성명		*성별	○ 남 ○ 여
	*국적	☐ 내국 ○ 외국(국 가 기 입)	*연락처	
공통(2)	*한글 성명		*생년월일	
	*영문 성명		*성별	○ 남 ○ 여
	*국적	☐ 내국 ○ 외국(국 가 기 입)	*연락처	
공통(3)	*한글 성명		*생년월일	
	*영문 성명		*성별	○ 남 ○ 여
	*국적	☐ 내국 ○ 외국(국 가 기 입)	*연락처	
개인(1)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외국인 비거주자)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 내국인여권+주민등록초(등)본 ○ 기타()		
	운전면허번호	운전면허증 선택 시 필수	여권번호	여권 선택 시 필수
개인(2)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외국인 비거주자)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 내국인여권+주민등록초(등)본 ○ 기타()		
	운전면허번호	운전면허증 선택 시 필수	여권번호	여권 선택 시 필수
법인(1)	*거주 국가	☐ 내국 ○ 외국(국 가 기 입)		
법인(2)	*거주 국가	☐ 내국 ○ 외국(국 가 기 입)		
법인(3)	*거주 국가	☐ 내국 ○ 외국(국 가 기 입)		

3. 거래목적 및 자금 원천 *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거래목적	☐ 사업상 거래 ○ 기타 ()				
*자금의 원천 및 출처	☐ 사업상 거래 ○ 금융소득	○ 근로/연금소득 ○ 상속/증여	○ 퇴직소득 ○ 기타()	○ 부동산임대소득	○ 부동산양도소득

4. 실제소유자 확인 *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 개인

*대표자와 실제소유자가 동일 합니까?	☐ 예 ○ 아니오			
실제소유자 확인 ('아니오' 선택 시 작성)				
*실제소유자 정보	*한글명			
	*영문명	여권 영문명	국적(외국인)	
	*주민등록번호		*거주 국가	☐ 내국 ○ 외국(국 가 기 입)
	*여권번호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 법인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	☐ 대상 ○ 미대상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 선택 시 작성)				
확인생략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 금융회사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상장법인 등) * 자본시장법 제 159 조의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			
실제소유자 확인 ('미대상' 선택 시 작성)				
*실제소유자 확인방법	☐ 주주명부 ○ 사원명부 ○ 정관/규약 ○ 기타()			
실제소유자 구분 (참고용)	다음 3단계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자연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			
	2) 1)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최대 지분 소유자			
	②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③ ①, ② 외에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2)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가맹점명을 입력하십시오.

(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파يسерб코리아 유한회사(이하 “Fiserv”라 한다)는 “Fiserv”가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 (이하 “FirstPay”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가맹점”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또는 사업장(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Fiserv”의 “FirstPay”를 통해 지급결제대행 및 매입대행서비스, 대금정산서비스 및 기타 관련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고객: “가맹점”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Fiserv”의 “FirstPay”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자
- ② 금융기관: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을 발행하는 은행, 신용 카드사 등 결제기관을 의미 함
- ③ 상품: 실물 상품과 디지털상품의 총칭으로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다.
- ④ 실물 상품: 고객의 결제 후 배송이 수반되는 유형의 상품 및 실생활에 행위가 수반되는 서비스
- ⑤ 디지털 상품: 실물 상품을 제외한 무형의 상품
- ⑥ 전자지급결제대행: 지불 수단의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각 거래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여 쇼핑몰과 고객에게 통보하는 “Fiserv”의 업무
- ⑦ 매입 대행: 금융기관이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대금의 정산을 위한 매입 처리(지급결제데이터 전송 업무 등) 대행하는 “Fiserv”의 업무
- ⑧ 대금 정산: “Fiserv”의 매입 대행 완료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Fiserv”의 계좌에 입금된 정상 거래의 지불 대금을 FirstPay전자결제서비스이용특약서 (이하 “특약서”)에서 정한 제반 수수료를 “Fiserv”가 공제한 후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 ⑨ FirstPay: “가맹점”이 관리,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고객이 구매한 상품의 대금지불에 대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매입 대행 업무, 대금 정산 및 본 계약서 및 기타 계약 당사자간에 서면 합의된 부가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Fiserv”의 전자지불서비스
- ⑩ 비정상 거래: “가맹점”의 쇼핑몰에서 1) 제3자에 의해 분실, 도난, 위조 또는 변조된 고객의 결제수단을 동용하여 이루어진 거래 또는 2) 고객 본인이 자신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현금 유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 또는 3) 가맹점이 고의나 과실로 대금 정산 이후에도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거래 또는 4) 기타 거래 내역의 사실 확인 이전에, “Fiserv”의 위험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 이하 “RM”이라 함)에서 비정상적인 거래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거래
- ⑪ 본인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 고객이 “가맹점”의 쇼핑몰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나 결제수단이 진정한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소지자 본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결제수단으로 제공되어 거래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 책임

제 3 조 (“가맹점”의 책임과 의무)

- ① “가맹점”은 “First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 내역의 사실 확인 및 쇼핑몰 미수금(채권) 발생시 채권 환수가 가능하도록 증빙자료(배송장, 수령증 등)를 포함한 거래내역 자료를 최소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 대해 “Fiserv”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제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에게 있다.
- ② “가맹점”은 “First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고객과의 거래에 대해 반품처리 또는 비정상거래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또는 “Fiserv”의 정당한 취소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해당 거래의 취소 의무와 취소 건에 대한 대금의 환불 또는 상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제 4 조 (“Fiserv”의 책임과 의무)

- ① “Fiserv”는 “가맹점”이 “FirstPay”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쇼핑몰” 운영시스템과 “Fiserv”의 전자지불시스템(Payment Gateway System)을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가맹점”에게 제공한다.
- ② “Fiserv”는 “FirstPay”를 연중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의 정기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시적인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7영업일 이전에 “가맹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 및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의한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은 예외로 한다.)
- ③ “가맹점”이 “Fiserv”의 FirstPay 모듈을 이용하여 전자지불 서비스를 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네트워크 상의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5 조 (대금 및 이용 수수료 정산)

- ① “Fiserv”와 “가맹점”은 “FirstPay”를 통해 “쇼핑몰”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결제대금 및 이용수수료를 본 계약서에 첨부된 FirstPay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특약서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 ② 전 항과 관련하여 “Fiserv”는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가맹점”에게 월1회(당월 말일 정산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 발급, 배부한다.
- ③ “Fiserv”는 대금 정산 후 “가맹점”의 귀책 사유로 확인되어 발생한 거래 취소 및 기타 차감 금액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부족할 경우 “가맹점”은 “Fiserv”가 지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④ 대금 정산 방식 및 제반 수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첨부된 “특약서”에 따른다.

- ⑤ “가맹점”과 “Fiserv”는 “FirstPay” 거래 중에 정산 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상호 통지하고 과오납 금액을 제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 ⑥ “가맹점”이 “FirstPay”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거래 취소 건에 대하여 “Fiserv”는 수수료를 환불한다. 다만, “특약서”에서 정한 지불수단 중 취소 시 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음을 사전 고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⑦ “가맹점”이 정산 대금 수령 은행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7영업일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불확실한 통지 및 미통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Fiserv”는 책임지지 않는다.
- ⑧ “가맹점”이 “First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정산 대금을 제3 자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Fiserv”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동의 없는 “가맹점”의 채권양도는 원천무효행위로서 “Fiserv”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⑨ 금융기관의 사유로 “Fiserv”의 대금 정산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가맹점”은 “Fiserv”에게 책임물을 수 없다.
- ⑩ 본 계약과 관련된 “가맹점”의 채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Fiserv”는 “가맹점”에 대한 “Fiserv”의 채권을 “가맹점”에 대한 “Fiserv”의 채무에서 “가맹점”의 동의 없이 상계할 수 있다.

제 6 조 (고객 민원의 처리)

- ① “가맹점”은 “FirstPay” 이용 중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고객이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가맹점”의 책임하에 제반 문제를 성실히 해결 하여야 하며 “Fiserv”는 문제해결 노력에 최대한 협조한다.
- ② 고객 또는 금융기관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 시 “가맹점”과 “Fiserv”는 상호 확보한 거래내역 관련 정보를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제출 요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제공, 통지하여야 한다.
- ③ “Fiserv”는 “가맹점”에게 정산 대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고객 민원 가운데 비정상 거래 및 거래 취소 사유(반품, 물품의 하자 등 포함)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통지하고 해당 거래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본 계약서의 만기 종료 또는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Fiserv”는 “가맹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Fiserv”가 지정한 은행 입금 계좌로 즉시 해당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 ④ 단, 전항에 의해 차감된 금액이 “Fiserv”의 귀책으로 입증될 경우, “Fiserv”는 해당 금액을 차기 대금 정산 지급액에 가산하여 “가맹점”에 지급한다.
- ⑤ “가맹점”이 본 조 ③항의 고객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지 않아, “Fiserv”에게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Fiserv”는 해당 사실을 “가맹점”에게 통지하고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 또는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실행을 할 수 있다.

제 7 조 (비정상 거래의 처리)

- ① 1) “가맹점”이 “First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가맹점”의 거래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의 입증이 필요하거나, 또는 2) 고객이 불법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발생시킨 비정상 거래에 대해 “Fiserv”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e-mail포함) 또는 유선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가맹점”은 거래내역 관련자료와 함께 제3조항에 명시한 제반 증빙자료(배송장, 수령증 등)를 요청 일로부터 제 3영업일 이내에 “Fiserv”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Fiserv” 또는 금융기관에서 전 항에 따라 비정상 거래로 확인된 해당 거래 내역의 취소 처리를 요청할 경우, “가맹점”은 즉시 해당 거래에 대한 취소 처리를 하여야 하며, “가맹점”의 취소 처리가 요청일로부터 7일 이상 지연될 경우 “Fiserv” 또는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 내역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비정상거래로 인하여 관련 금융기관에서 “Fiserv”에게 지급할 정산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 보류 하거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Fiserv”는 자신의 판단으로, “가맹점”에게 지급할 정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보류 조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급 보류로도 해당 금액이 부족하여, “Fiserv”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은 “Fiserv”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Fiserv”의 손실 금액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가맹점”에 대한 지급 보류 조치는 본 계약이 만기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된 이후에도 적정 기간 유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Fiserv”는 “가맹점”의 지급 보류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1. “가맹점”의 “쇼핑몰”에 대해 비정상 거래의 발생이 완전히 근절 되었으며, “Fiserv”의 예상 손실이 현저히감소하였다는 “Fiserv”의 판단이 있는 경우
 - 2. “가맹점”이 지급 보류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이행지급보증보험, 근저당, 예금 질권 등 포함)를 “Fiserv”에게별도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 3. 최장 할부 매출이 발생한 건의 할부 결제 기간이 종료되고 이후 고객의 할부 항변 또는 금융기관의 거래 취소, 차감, 지급 보류 등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Fiserv”가 판단하는 경우
 - 4. 기타 “가맹점”과 “Fiserv”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급 보류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 8 조 (신용카드 할부판매)

- ① “First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가맹점”의 할부 거래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Fiserv”는 “가맹점”에게 신용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 월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Fiserv”의RM정책에 따라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Fiserv” 또는 금융기관은 “가맹점”의 쇼핑몰 할부판매가 회원가입비(영업 수당 제공을 통한 회원제 형태의 단단계 영업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고 민원제기 가능성이 많은 유·무형의 용역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포함)를 청구하

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중지 또는 할부 거래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할부 거래에 따른 할부 항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Fiserv”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9 조 (신용카드 승인 제한)

- ① “Fiserv”는 “가맹점”의 신용도, 매출 유형, 고객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 빈도, 민원해결을 위한 협조성 등 “Fiserv”의 리스크 관리, 운영 방침에 따라 “가맹점”에 대하여 일, 월, 년, 신용카드사별로 신용카드 승인 한도 및 할부 거래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비정상 거래 등의 사유로 확인되어 승인 한도가 제한된 경우, 금융기관의 승인 제한 조치에 따른 모든 손실 발생 부분은 “가맹점”이 책임을 진다.
- ③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승인 한도 제한 및 승인 중지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Fiserv”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에게 그 사유 및 결과를 유선 또는 서면, 이메일 (e-mail)로 통지하고,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Fiserv”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10 조 (거래 정보의 제공)

- ① “Fiserv”는 정부기관(예: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청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가맹점”의 거래 정보와 고객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 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은 “First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거래내역(구입 물품, 가격 등) 및 개인정보(고객 성명, 주소, 전화 번호, E-Mail 등)에 대하여 반드시 고객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Fiserv”에게 제출해야 하며, “Fiserv”는 “가맹점”으로 부터 제공받은 거래 내역의 진위성, 본인 사용, 개인정보이용 동의 여부 등을 고객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 11 조 (손해 담보물 제공)

- ① “가맹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Fiserv”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호 약정한 지급한도 금액에 대한 **일금** 원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본 계약 체결 이전에 “Fiserv”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의 기간은 “FirstPay” 이용계약 기간과 동일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시 “가맹점”은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증권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Fiserv”는 “FirstPay”의 서비스 제공 및 정산 대금의 지급을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은 “가맹점”의 재무0신용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Fiserv”가 요청한 정보 및 “가맹점”의 신용상태 및 거래금액 규모 등의 변경에 따라 “Fiserv”가 요청한 추가 손해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소유권)

“Fiserv”가 “가맹점”에게 제공한 “FirstPay”의 모든 구성요소(FirstPay 모듈을 포함)는 전적으로 “Fiserv”의 소유이며 “가맹점”은 “Fiserv”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 제공, 타용도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서는 20 年 월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 년으로 하고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쌍방 간에 서면상의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 14 조 (계약의 변경, 연장 및 해지)

- ① “가맹점”과 “Fiserv”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서면 통지 후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가맹점” 또는 “Fiserv”는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언제든지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 ③ “가맹점” 또는 “Fiserv”는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본 계약을 일시 중지 또는 즉시 해지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손해발생 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가맹점”또는 “Fiserv”가 본 계약에 따른 책임 및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시정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가맹점” 또는 “Fiserv”가 제3자와 합병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가맹점” 또는 “Fiserv”가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각자의 시스템을 상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기타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일방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쌍방간에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된 경우
 5. 특별한 사정 없이 15일 이상 결제 승인 요청이 없거나 사전 서면 통지 없이 타 업체로 지불결제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
 6. “가맹점”이 “Fiserv”에게 등록 요청한 사이트(홈페이지)외 제3의 사이트에서 매출이 발생할 경우
 7. “가맹점”이 본 계약 제11조 ③항에 따른 “Fiserv”의 정보 제공 및 손해 담보물 관련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8. “가맹점”에 “FirstPay”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경우, “Fiserv”의 재무 또는 보안 관련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Fiserv”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했을 경우

9. “가맹점”이 “Fiserv”의 Compliance 규정, 관련 법령 또는 감독기관 및 “금융기관”의 지시사항 또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 ④ “가맹점”은 계약해지 후 “FirstPay” 이용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해 고객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Fiserv”와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Fiserv”는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민원 발생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상호 합의가 있을 때까지 “가맹점”이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반환을 보류할 수 있다.
- ⑥ 본 계약서 제5조 및 제6조는 본 계약서의 만기 종료 또는 중도 해지 이후에도 고객의 민원발생 원인 요소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 ⑦ 상호, 대표이사, 수수료 등 변경 사유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기존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신 계약에서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 15 조 (서비스 중지 사유)

- ① “가맹점”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법규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가맹점” 대표가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으로 등재되거나 신용이 현저히 나쁘거나 또는 “가맹점”이 제3 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위험이 있는 경우 “Fiserv”는 정산 대금에 대하여 지급을 보류하고 “FirstPay” 서비스를 즉시 중지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이 본 계약 3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Fiserv”는 “FirstPay” 서비스 중지 또는 정산 대금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지급 보류, 승인 요청에 대한 승인 제한, 승인 완료된 건에 대한 취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6 조 (계약상 지위의 승계)

- ① 계약 당사자가 합병, 현물출자, 법인전환, 해당영업양도 등 계약상 지위 변동은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쌍방은 사유 발생 30일 전에 발생 사유와 그 내용 및 상대방(제3자)과의 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른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전 항의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통지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확실한 통지를 한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③ 본 조 1항에 의한 동의가 있거나, 통지 도달 후 7일 내에 “Fiserv”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FirstPay”서비스를 제3자(권리의무 양수인을 포함)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잔존의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은 “Fiserv”와 제3자(권리의무 양수인을 포함)와의 관계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④ “가맹점”이 “FirstPay” 이용기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발생한 개인사업자와 “Fiserv”간의 채권,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법인은 이를 중첩적으로 승계한다.

제 17 조 (분쟁의 조정)

- ① 별도의 부칙으로 정한 조항이 본 계약 조항 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② 본 계약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가맹점”과 “Fiserv”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 ③ “가맹점”은 자신이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쇼핑몰”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따라성실히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 (금융정보보호)

- ① “가맹점”과 “Fiserv”는 계약 기간 동안 취득한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관련정보, 상대방의 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귀책 사유자가 정보 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② “가맹점”은 “FirstPay”를 이용한 고객의 지불 정보를 결제 승인 이후에 별도로 보유할 수 없으며, 고객의 지불 정보를 대행 입력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9 조 (통지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 ① “가맹점”과 “Fiserv”는 사업자 정보(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시스템 운영 및 이용 수수료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상대방에게 변경내용을 즉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발생의 귀책 사유자가 손해 배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본인 사용 여부가 문제되는 거래, 비정상 거래 등을 포함한 고객과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고 만일 이로 인하여 “Fiserv”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자가 전액 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채권보전이나 회수에 필요한 업무상 비용에 대해서도 귀책사유자가 부담한다. 단, “Fiserv”의 손해배상 최대 금액은 “Fiserv”가 “가맹점”으로부터 직전 1년간 수취한 수수료의 총액으로 한다. 또한, 간접손해, 특별 손해 및 징벌적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Fiserv가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 계약과 관련된 Fiserv의 손해배상 책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가맹점”은 “Fiserv”가 제공한 “FirstPay”를(FirstPay 모듈을 포함)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고,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 수정한 경우 발생한 문제 손실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제 20 조 (정부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금지)

양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및 양사의 업무 협약 유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임직원 및 아래 각 호의 대상들에게 금전이나 이와 유사한 대가를 (이하 '뇌물'이라 함) 제공하거나, 금품 수수를 승인(혹은 묵인)하거나, 또는 기타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뇌물'의 제안 또는 제공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

- 1. 정부 소유 및 정부 통제하의 기업 및 공공 국제기구를 포함한 모든 정부관료 또는 공무원
- 2. 모든 정당, 정당의 간부 또는 후보자
- 3. 상기 당사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중개인, 개인 혹은 단체

제 21 조 (수출입 규정 준수)

“가맹점”은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에 의거 설립된 알카에다 및 탈리반과 그 관련자 및 단체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위원회’가 위결의 및 동 후속 결의(<http://www.un.org/sc/committees/1267>), 미국의 OFAC(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등 (이하 “OFAC 관련 법규”)에서 수출입을 제한하는 국가 및 단체와 어떠한 사업상 거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계약기간 동안 “OFAC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데 동의한다.

제 22 조 (감사 권한)

매년 한번, “Fiserv” 또는 “Fiserv”가 지정한 감사인은 “가맹점”의 본 계약 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Fiserv”의 비용으로 “가맹점”의 정규 운영 시간 및 “가맹점”측 담당자의 동행 하에 “가맹점”에 대한 현장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단, 현장감사를 통해 “가맹점”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장감사에 대한 모든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제 23 조 (기타)

- ① “가맹점”은 “Fiserv”의 상호로 “FirstPay” 대금이 청구됨을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결제 화면 또는 중요 화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Fiserv”의 “FirstPay”는 지불 수단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 ③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양 당사자 간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상의 양해 또는 합의에 우선하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계약상의 권리 불행사는 그 권리의 포기 또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묵시적인 승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④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및 기타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가맹점”과 “Fiserv”가 상호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가맹점” 본점소재지: 회 사 명: 대표자성명: (인)	“Fiserv”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34, 씨티센터타워 12층 파이서브코리아 유한회사 대표이사 김 종 윤 
---	--

FirstPay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특약서

제 1 조 (이용 수수료 및 정산 주기)

- ① “가맹점”은 “Fiserv”가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써 아래 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Fiserv”에게 지급한다. 단, 이용 수수료(율)는 국세청(여신금융협회)에서 배포하는 영세 중소기업 구분 자료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의 4, 제25조의 5 그리고 제25조의 6에 따라 “가맹점”의 동의 없이 매 반기마다 변경 될 수 있다.
- ② “Fiserv”는 아래 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FirstPay”를 이용하여 “쇼핑몰”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의 결제대금을 “가맹점”에게 지급한다.
- ③ “가맹점”은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실제와 다르게 보고된 과세표준, 매출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우대수수료를 적용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적용 등으로 인하여 “Fiserv”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3자가 “Fiserv”에게 제기한 모든 클레임으로부터 “Fiserv”를 면책 시킨다.
- ④ 관련 법규의 제·개정 또는 카드사·은행 등의 정책 변경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본 특약서에 명시된 이용수수료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수수료 변경에 대한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수수료 변경 협의 요청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상대방이 수수료 변경 협의 요청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수수료 변경에 대한 양 당사자간의 협의를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카드사의 “Fiserv”에 대한 PG수수료가 본 특약서에 명시된 수수료와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가맹점”에 전자결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Fiserv”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Fiserv”는 “가맹점”에게 30일 사전 서면 통지를 보낸 후, 본 특약서 및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해지 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본 조항에 따른 “Fiserv”의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Fiserv”에게 청구할 수 없다.

구 분		수수료		이용 선택	정산 주기	비고
신용카드	국내카드	일반	%	● 사용		• 무이자 수수료는 수수료(율)과 별도 적용
		중소3	%			• 당사 수수료는 기본정책으로 책정됨.
		중소2	%			• 정산주기 택1 일정산/주정산/월정산/월2회/월4회
		중소1	%			• 정산주기는 영업일 기준
		영세	%			
	해외카드	VISA	%	○ 사용  미사용		
		MASTER	%			
		JCB	%			
		AMEX	%			
		DINERS	%			
		은련	%			